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3

발의연월일: 2020. 6. 9.

발 의 자:김원이・이성만・민홍철

양이원영·윤후덕·송갑석

김남국 · 최혜영 · 신정훈

기동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6월 3일, 9세 아동이 계모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감금됐다가 의식불명 후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 원까지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처벌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

이에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 죄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의 지를 대변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조).

법률 제 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5년"을 "15년"으로 한다. 제5조 중 "3년"을 "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	제4조(아동학대치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	
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u>5년</u> 이상의 징역에 처한	<u>15년</u>
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	
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때에는 <u>3년</u> 이상	<u>7년</u>
의 징역에 처한다.	